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김민석 (고용노동부 등 5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사용료 등에 대해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 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0.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부담금액에 관계없이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1항 중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을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공동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그 조성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조성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6조(「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 :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징수
2.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점용이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

제7조(「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8조(「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다.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제9조(「하천법 시행령」의 개정)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점용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남은 금액”을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

다)”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중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하천수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부담금·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 또는 징수되는 부담금·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담금·사용료 등의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부담금 의 분할 납부는 해당 연도의 부 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u><단서 신설></u>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 ----- ----- ----- ----- 다만, 사업주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부담금액에 관계없이 분할 납부 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u>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u>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5일전까지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10조의5(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 <u>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u> ----- ----- ----- ----- ----- ----- ----- ----- ----- 1. <u>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u>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공동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u>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u>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 ⑦ (생략)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 <u>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u>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그 조성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u><신설></u>	<u>⑤ 제4항에 따라 조성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u>
<u>④ (생략)</u>	<u>⑥ (현행 제4항과 같음)</u>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 조정 부과에 관하여는 <u>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u>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u> -----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 연도분의 전부를 미리 징수한다. <u>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이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u>	제47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 ----- ----- ----- ----. <u>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u> <u>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신 설>	1. <u>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u> : <u>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징수</u>
<신 설>	2. <u>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u> : <u>점용이나 사용이 시작</u>

② ~ ④ (생략)	<u>된 후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u> <u>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③ (생략)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다.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⑤ (생 략)	<u>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 이 발생한 경우</u> <u>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 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u> <u>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u> ⑤ (현행과 같음)
----------------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생략)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u>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② ----- ----- ----- ----- <u>점용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u> ----- <u>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u> -----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 ③ (생략)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④ ----- -----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하천
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
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
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 . --- 하천
수사용료의 납부의무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하천수사용료
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연 락 처	(044) 202 - 7498
산업통상부 화학산업팀	
연 락 처	(044) 203 - 4936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연 락 처	(044) 203 - 440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연 락 처	(043) 719 - 2705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31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연 락 처	(044) 201 - 7689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연 락 처	(044) 201 - 7071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224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연 락 처	(044) 201 - 7538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연 락 처	(044) 201 - 7662